

(參 照)

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(안)

○ 기 간 : 2000. 2. 15(화) ~ 2. 22(화) (8일간)

일 시	구 분	개 요		비 고
		본 회 의	위 원 회	
2. 15 (화) 11 : 00		○ 개 회 식 ○ 시정연설 ○ 제1차 본회의 ·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· 2000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결의(안) · 조례안등 일반의안 상정의건		장소) 본회의장 사회) 의사담당
2. 16(수) 09 : 30 11 : 00		휴 회	○ 의회운영위원회 운영(09:30) · 200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 계획 청취 · 조례안등 일반의안 심사 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(11:00) · 조례안등 일반의안 심사	장소) 상임위원회실
2. 17(목) 10 : 00	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운영 · 2000년도 시정업무 계획청취	장소) 상임위원회실
2. 18(금) 10 : 00	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· 2000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	장소) 상임위원회실
2. 19(토) 10 : 00		휴 회	○ 각 상임위원회운영 · 2000년도 시정업무 계획청취	장소) 상임위원회실
2. 20(일)		휴 회 (공휴일)		
2. 21(월) 10 : 00 13 : 20			○ 각 상임위원회 운영 · 2000년도 시정업무 계획 청취 ○ 정보통신기관(업체) 현장견학	장소) 상임위원회실
2. 22(화) 11 : 00		○ 제2차 본회의 · 조례안등 일반의안 의결의 건 · 분당고압송전선지중화를위한특별 위원회활동기간연장(안) ○ 폐 회		장소) 본 회 의 장

(參 照)

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내역

연번	안 건 명	소 관 부 서	소관위원회
1	○성남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	의회사무국	의회운영
2	○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"	"
3	○성남시의회위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	"	"
4	○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"	"
5	○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	총 무 과	행정경제
6	○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	시 민 봉 사 과	"
7	○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중개정조례안	공보담당관실	"
8	○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안	지역경제과	"
9	○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	세 정 과	"
10	○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	"	"
11	○성남시2000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	회 계 과	"
12	○성남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	중앙운동장사무소	사회복지
13	○성남시농지개량사업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
14	○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	"	"
15	○성남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해자부담금징수조례안	도 로 과	"
16	○성남시공동구설치및유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	"	"
17	○성남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	"	"
18	○성남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	"	"
19	○분당구서현1동 울동지역 규제완화 요청의 건	도시마 외4개과	"
20	○성남시공수의조례폐지조례안	농업기술센터	행정경제

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 요약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	성남시의회 정례회 의운영에 관한 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지방자치법('99.8.31) 및 동법 시행령('99.12.31)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년 1회에서 년2회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준칙안에 의거 정례회의 집회일자, 회기,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함 ☐ 주요골자 ○ 정례회의 회기는 년2회를 합하여 35일이내로 (안 제3조) ○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5일에 집회 (안 제4조 제1호) ○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 (안 제4조 제2호) ○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,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 심의(안제5조 제1항) ○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의결 및 기타 부의안건 심의 (안 제5조 제2항)	의회사무국	의회운영
2	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지방자치법('99.8.31) 및 동법 시행령('99.12.31) 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정기회 제도가 년 1회에서 년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과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 ☐ 주요골자 ○ “정기회”를 “정례회”로 개정(안 제2조 제2항)	의회사무국	의회운영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3	성남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및여비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지방자치법('99.8.31) 및 동법시행령('99.12.31) 의 개정에 따른 동 조례를 상위법령의 내용 과 맞게 개정하고자 함. ☐ 주요골자 가. 의정활동비 ○ 월 350,000원 지급하던 것을 월 550,000원으로 지급(안 제2조제2항) 나. 회기수당 ○ 회의수당의 명칭을 회기수당으로 명칭변경 ○ 회의수당 1일당 50,000원 지급하던 것을 1일당 70,000원으로 지급(안 제3조제2항) 다. 출장여비 ○ 의회사무실 내에서의 출장을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으로 정정(안 제7조제2항)	의회사무국	의회운영
4	성남시의회의원 상해동보상금 지급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지방자치법('99.8.31) 및 동법시행령('99.12.31) 개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“회의수당”을 “회기수당”으로 명칭변경 (안 제2조, 제4조) ○ “시 본청관련 실·국장”을 “시본청 관련국장” 으로 개정(안 제9조) ○ “날로부터”를 “날 부터”로 개정(안 제6조) ○ “구좌”를 “계좌”로 개정(안 제8조) ○ “심의위원회의 임기”를 “심의위원의 임기”로 개정(안 제11조) ○ “심의회회의 간사” 및 “심의회회의 수당”을 “심의회 간사” 및 “심의회 수당”으로 개정 (안 제14조, 제15조)	의회사무국	의회운영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5	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대통령령 제16610호('99.12. 7)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각급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 시달로 부분개정 ○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조정하는 한편,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 ☐ 주요골자 ○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 (안 제23조 제2항) ○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정기점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,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) ○ 남계(男系)와 여계(女系)친족간의 형평성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 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 (안 별표 3)	총 무 과	행정경제
6	성남시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'76년도까지의 지붕개량사업이 '77년 주택개량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붕개량 사업용자금은 '80년말까지 완전 회수로 사실상 사업종료와 함께 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조례임 ☐ 주요골자 ○ 동 조례 폐지	시민봉사과	행정경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7	성남시시정소식 발행조례중개정 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시정소식지의 이미지 제고와 시민에게 친근감을 주는 소식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공모한 제호를 시정소식편집위원회에서 “비전성남”으로 확정함에 따라 조례상에 표기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○ 편집위원회 위원과 명예기자의 임기와 해촉 사유를 명기함으로써 학식있고 경륜있는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제공 ○ 편집위원회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성남시시정소식발행조례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 기재되어 있는 “시정소식”의 명칭을 “비전성남”으로 명칭변경 ○ 편집위원의 임기 및 해촉사유 신설 (안 제6조제4항·제5항) ○ 명예기자의 임기 및 해촉사유 신설 (안 제9조제2항·제3항) ○ 제10조 “수당등 지급”의 규정에 편집위원의 수당지급 신설 (안 제10조제2항)	공보담당관실	행정경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8	성남시소비자 보호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 ○ 그 동안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던 소비자 보호업무를 지역실정에 맞게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사례의 능동적인 대처와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의 기반조성 ○ 성남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성남시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하여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·수수료등의 조정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 ○ 물가안정을 위하여 물가정보수집·제공을 위한 유급 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□ 주요골자 ○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(안 제3조) · 소비자는 물품 및 용역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와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○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(안 제11조) ·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금 지원 ○ 소비자 피해구제신청과 그 처리(안 제18조) ○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설치·운영(안 제27조) · 소비자의 보호 및 시민생활 안정을 위한 시책등을 자문·심의·조종하기 위한 기구 · 위원회의 구성(안 제28조) · 위원회의 기능(안 제30조)	지역경제과	사회복지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										
9	성남시시세조례 중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주행세 신설등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지방세에 주행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 (안 제3조, 제29조) ○ 이의신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한 이의신청분과 위원회를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고 과세표준의 결정을 위한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정비 운영 (안 제9조) ○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7인승이상 10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 구분되어 등록됨에 따라 일시에 세액이 급등하므로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정비 · 2000년 ~ 2004년 : 승합자동차의 세액 · 2005년 : 승용차세액 - 승합차세액의 33%를 승합자동차 세액에 합한 금액 · 2006년 : 승용차세액 - 승합차세액의 66%를 승합자동차세액에 합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자 부칙에 규정함 (안 부칙제3조)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27 1504 968 1675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<th>2000~2004년</th><th>2005년</th><th>2006년</th><th>2006이후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당세액</td><td>65,000원</td><td>223,300원</td><td>381,610원</td><td>544,720원</td>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2000~2004년	2005년	2006년	2006이후	대당세액	65,000원	223,300원	381,610원	544,720원	세 정 과	행정경제
구분	2000~2004년	2005년	2006년	2006이후										
대당세액	65,000원	223,300원	381,610원	544,720원										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0	성남시시세감면 조례중개정조례 안	☐ 제안이유 ○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운영과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 확대(안 제2조) ○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대상 확대(안 제2조제2항 및 제4조) ○ 지정 문화재에 대한 감면 확대(안 제8조) ○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(안 제10조) ○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, 종합 토지세,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(재산할) 면제 규정을 폐지(안 제13조, 제14조) ○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기간 축소 (안 제21조의2)	세 정 과	행정경제
11	성남시2000년 제1차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	☐ 제안이유 ○ 백현유원지 개발과 관련하여 정자동1, 3-1번 지를 매각하여 2001년 세계디자인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부대시설을 건립하고 유원지를 개발하여 시민휴식공간을 확충코자 함 ○ 중동, 하대원 일대 도심속 자투리 유휴지를 활용하여 시민생활권 주변의 녹지량 확충과 대화와 휴식장소를 제공하는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코자 함 ☐ 주요골자 ○ 취 득 : 토지 2필지 3,197㎡ ○ 처 분 : 토지 2필지 310,413.6㎡	회 계 과	행정경제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2	성남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 하키경기장에서 축구장(천연잔디구장)으로 시설변경됨으로써 시설 사용료의 조정과 사용기준을 마련하여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도모키 위해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천연잔디구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기준을 정하여 활용(안 제23조) ·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축구대회 · 전국 규모대회 · 도단위 축구대회 결승전 및 폐회식 · 시단위 축구대회 결승전 및 폐회식 ·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또는 주요행사 ○ 인근시(수원시, 안양시)사용료 및 양잔디구장인 미사리축구장의 사용료와 현실화를 고려하여 부분조정 (안 제10조) · 전용사용료 - 체육행사 660천원(평일기준) - 체육행사이외의행사 : 1,500천원(＂) · 연습사용료 - 개인 30천원 - 단체(10인이상) 20천원	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	사회복지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3	성남시농지개량 사업부담금징수 조례 폐지조례 안	□ 제안이유 ○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사업 시행의 원활과 공사 및 시설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1973. 7. 1 조례 제 51호로 공포되어 운영되었으나 모법인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94년 폐지되므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□ 주요골자 ○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
14	농지개량조합구 역외농지개량 시설관리조례 폐지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3 규정에 의거 농지개량조합구역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 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보존의 적정을 기하고자 1974.10.10 조례 제115 호로 공포운영되었으나 모법인 농촌근대화 촉진법이 94년 폐지되므로 인하여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함 □ 주요골자 ○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	재난재해관리과	도시건설
15	성남시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및 도로손해자부담 금징수조례안	□ 제안이유 ○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 손해자 부담 금 징수조례중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	도 로 과	도시건설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6	성남시공동구 설치및유지관리 조례개정안	☐ 주요골자 ○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 검사는 시장이 정한 자가 행한다로 변경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는 원인자가 실시하고 시장은 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여부 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(안 제5조제2항) ○포장도로굴착, 직접복구 표준단면에 국지도로의 아스팔트포장 단면을 추가하여 소규모 포장시 콘크리트 포장후 1~2일 경과되어 아스콘포장을 하여 주민불편 사항 사전예방 (안 별표 2) ○투수콘의 표준단면(표층 3cm, 기층 10cm, 모래 5cm)를 투수콘의 표준단면(표층 5cm, 기층 10cm, 모래 3cm)로 현재시공하고 있는 일반적인 투수콘 포장단면에 맞도록 개정 (안 별표 2) ○법령위임 없는 행정벌 규정 삭제 (안 제7조) ○권한위임 (안 제7조) ☐ 제안이유 ○공동구 출입자에 대하여 관리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규제개혁으로 허가사항을 신고 처리로 완화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점용자는 공동구내 설치된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상 출입을 하고자 할 때 현행조례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얻어 출입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신고만 하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 제4항)	도 로 과	도시건설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7	성남시도로관리 심의회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'99. 8. 6 개정된 도로법시행령제24조의9 도로관리위원의 구성을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위원의 자격이 완화되어 상위법에 적합하도록 개정코자 함 ☐ 주요골자 ○ 현행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을 도로법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여 위원자격을 다양화함 (안 제2조제3항) ○ 예산의 범위내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(안 제11조)	도 로 과	도시건설
18	성남시설제자문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개정('99.10.30)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동조례를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함 ☐ 주요골자 ○ 동시행령이 개정되어 설계자문 위원의 자격을 “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”를 추가하여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(안 제2조3항) ○ 설계 자문대상을 설계변경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계획 또는 공법이 변경되는 공사로 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시행코자 함 (안 제5조)	도 로 과	도시건설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19	분당구서현1동 울동지역규제완화 요청의 건	○ 설계자문을 1회이상 반도록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당초 3단계에 걸쳐 설계자문을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단축 (안 제7조5항내지7항) ○ 일괄 입찰 시의 심의의결 방법을 설계적격 또는 부적격으로만 하던 것을 설계점수와 함께 의결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(안 제13조제2항) ☐ 제 출 자 ○ 분당구 서현1동 (마을대표) 한범구 울동 (마을대표) 한영승 ☐ 내 용 1. 서현1동 체육공원 시설용지를 해제하든지 자연녹지로 변경요망 2. 서현1동, 울동지역 자연녹지 건폐율을 20%에서 40%이상 상향조정 또는 준주거지로 용도변경 요망 3. 주민생활 편의를 위해 도로망 확충및 시공을 빠른시간내 착공하여 주시고 일반 대중교통의 노선연장 또는 운행회수를 늘려 주기 바람 4. 국군수도통합병원(공공시설) 및 시민휴식 공간(울동자연공원)을 위하여 수용된 토지외에 공원녹지,보존녹지 해제를 건의함 5. 울동지역 숙박 및 편의시설 완화요망 ☐ 분 류 : 청 원 에 관 한 것	도시과의 4개과	도시건설

연번	안 건 명	부 의 안 건 요 약	소관부서	비 고
20	성남시공수의 조례 폐지조례안	☐ 제안이유 ○ 수의사법에 조례제정의 근거가 없으며 수의사법 제21조 및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두수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공수의 위촉 필요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코자 함 ☐ 주요골자 ○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	농업기술센터	행정경제